|  |  |  |
| --- | --- | --- |
| **크로스보더(跨境)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3〕96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국무원판공청이 상무부등 부문에 하달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출지원실시 유관정책의견에 관한 통지》(국판발[2013]89호)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거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 세수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화물을 수출(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명확히 한 수출퇴(면)세 불허 또는 면세화물 제외, 이하 동일)하고,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할 경우, 증치세, 소비세 퇴(면)세 정책을 적용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증치세 일반납세인에 속하며, 이미 주관세무기관에서 수출퇴(면)세 자격인증을 처리한 경우  (2) 수출화물이 해관수출화물통관서 (수출환급 전용)를 취득하고, 해관수출화물통관서 전자정보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3) 수출화물이 퇴(면)세 신고기한 마감일 내에 외화를 획득한 경우  (4)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속할 경우, 수출화물 취득에 상응하는 증치세 전용 영수증, 소비세 전용 납세신고서(분할단) 또는 해관수입증치세, 소비세 전용 납세신고서를 구입하고 상술한 증서의 유관 내용과 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 전용) 유관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화물을 수출하고, 본 통지 제 1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하기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증치세, 소비세면세 정책을 적용한다.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경우  (2) 수출화물이 해관에서 발급한 수출화물통관서를 취득한 경우  (3) 구입한 수출화물이 합법적으로 유효한 입하증명을 취득한 경우  3. 전자상거래 수출화물은 퇴(면)세, 면세정책을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퇴(면)세, 면세신고를 처리한다.  4. 본 통지 퇴(면)세,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판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상거래수출기업 및 제 3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전개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제 3자 플랫폼이 본 통지에서 규정한 퇴(면)세, 면세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현행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다.  6. 본 통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30일 |  |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税收**  **政策的通知**  财税〔2013〕96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落实《国务院办公厅转发商务部等部门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意见的通知》（国办发〔2013〕89号）的要求，经研究，现将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以下称电子商务出口）税收政策通知如下：  　　一、电子商务出口企业出口货物（财政部、国家税务总局明确不予出口退（免）税或免税的货物除外，下同），同时符合下列条件的，适用增值税、消费税退（免）税政策：  　　1.电子商务出口企业属于增值税一般纳税人并已向主管税务机关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  　　2.出口货物取得海关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且与海关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一致；  　　3.出口货物在退（免）税申报期截止之日内收汇；  　　4.电子商务出口企业属于外贸企业的，购进出口货物取得相应的增值税专用发票、消费税专用缴款书（分割单）或海关进口增值税、消费税专用缴款书，且上述凭证有关内容与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有关内容相匹配。  　　二、电子商务出口企业出口货物，不符合本通知第一条规定条件，但同时符合下列条件的，适用增值税、消费税免税政策：  　　1.电子商务出口企业已办理税务登记；  　　2.出口货物取得海关签发的出口货物报关单；  　　3.购进出口货物取得合法有效的进货凭证。  　　三、电子商务出口货物适用退（免）税、免税政策的，由电子商务出口企业按现行规定办理退（免）税、免税申报。  　　四、适用本通知退（免）税、免税政策的电子商务出口企业，是指自建跨境电子商务销售平台的电子商务出口企业和利用第三方跨境电子商务平台开展电子商务出口的企业。  　　五、为电子商务出口企业提供交易服务的跨境电子商务第三方平台，不适用本通知规定的退（免）税、免税政策，可按现行有关规定执行。  　　六、本通知自2014年1月1日起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3年12月30日 |